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17호
----------	-------------

제출연월일 2007. 2. 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코져 함.

※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서주민수에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음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안 제2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7. 1. 24 ~ 2. 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②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6.1.11>
- ⑩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 [본조신설 1999.8.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9]